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발 의 자 : 이화숙 의원 외 3인

2. 제정이유

○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·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 -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○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구성, 기능, 위원장 등의 직무, 회의 수당(안 제5조~제9조)

○ 비밀준수 의무와 포상관계 (안 10조-11조)

4. 관련법률

○「학교폭력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제4조)

○「초중등교육법」(제2조, 제61조)

○「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(제3조, 제4조)

○「성주군 포상조례」(제2조)

5. 검토의견

□ 발의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을 학교에 만 맡겨 둘 것 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아래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

○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,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또한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고,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 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학교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수당규정을 두었으며

○ 비밀 준수 의무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회에서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정 조례로서

○ 법리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